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명예교수 복무 범위 확대 (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)

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강의 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

나. 시설 이용 등 처우 확대 (안 제7조 신설)

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명예교수의 연구·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0.0. ~ 0.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특별강의를 하게”를 “강의 또는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연구비 또는 특별강의”를 “연구비, 강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직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비”를 “연구비, 강의료”로, “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사립대학의 경우에는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처우) 명예교수는 도서관 및 연구시설 등 대학 시설 이용에 있어 해당 대학 재직 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복무)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,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<u>특별강의를 하게</u> 할 수 있다.	제5조(복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강의 또는 필</u> <u>요한 직무를 담당하게</u> ----- -----.
제6조(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)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<u>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</u> 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<u>연구비</u>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<u>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6조(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) ① ----- ----- <u>연</u> <u>구비, 강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직무</u> -----. ② ----- <u>연구비, 강의료</u> ----- <u>예산의 범</u> <u>위에서</u> ----- -----. 제7조(처우) <u>명예교수는 도서관 및 연구시설 등 대학 시설 이용에 있어 해당 대학 재직 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8